

청주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3가단687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서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, 담당변호사 유경태

변 론 종 결 2024. 3. 29.

판 결 선 고 2024. 4. 19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청주시 상당구 C, D에 있는 E아파트 F호 중 2/9 지분(이하 '이 사건 부동산 지분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소외 G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3. 4. 18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 위 G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기록에 의하면, 원고는 G의 양수금 채권자이고 G은 피고와 H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, H가 2022. 12. 5. 사망하여 피고와 G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2023. 4. 18.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G은 원고에 대하여 30,613,48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이 2023. 4. 18.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.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항변의 요지

소외 G은 H의 사망 이전에 H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 상당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G은 H의 생전인 2015. 3. 28.부터 2015. 4. 17.까지 사이에 H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6,100,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(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), H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0,500,000원, H의 채무(대출금)

30,000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순상속재산인 20,500,000원(= 50,500,000원 - 30,000,000원)에 G이 특별수익한 26,100,000원을 합산하여 산출된 구체적 상속재산

46,600,000원(= 20,500,000원 + 26,100,000원)을 G의 법정상속분인 2/9로 곱하여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구체적 상속분이 0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.

결국 재산분할결과로 G이 무자력으로 되었더라도 재산분할결과가 G의 구체적

상속분(46,600,000원×2/9 - 26,100,000원 = -15,744,444원)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

분할약정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

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효두

별지